

## **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**

(제62조제1항 관련)

### 1. 대행자의 지정기준

#### 가. 일반적 요건

- 1)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, 검사경험,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
- 2)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·구조·설비 및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

#### 나. 구체적 기준

- 1)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·구조·증명서·공학시스템에 관한 규정집 및 관련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
- 2) 연구조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
  - 가)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, 관리자 및 지원 인력을 보유할 것
  - 나) 대행업무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방조직을 갖추는 것
- 3) 검사원의 검사서비스의 집행 및 비밀 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을 것
- 4) 검사 신청 시 검사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
- 5)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
- 6) 검사품질에 관한 정책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고 있을 것
- 7) ISO9000시리즈 이상의 내부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
  - 가) 조직 자체의 규정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관리 및 유지될 것
  - 나) 법 제112조에 따른 협정을 준수할 것
  - 다) 검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박검사원의 책임, 권한 및 검사원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문서화되어 있을 것
  - 라) 모든 검사는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
  - 마)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
  - 바) 검사원의 자격과 지식을 계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
  - 사) 품질기준이 잘 유지되고 품질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잘 유지될 것

아) 품질관리에 관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종합적인 내부감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을 것

8)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 품질관리제도의 확인을 받을 것

## 2. 대행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가. 대행자 지정요건의 준수 및 유지 여부

나.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이행 여부